의안번호	2203159
의 뢰 인	임미애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4.
추계번호	24F309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수도권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78.6억원, 2027년 93.6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57.7억원(연평균 85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166.4억원(연평균 55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91.3억원(연평균 3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법인의 수도권 밖 지사설립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자료의 부재로 세수 감소 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79조제1항·제2항)	취득세	−42.7	−49.6	−57.6	−150.0	−50.0
	재산세	−3.7	−3.7	−3.7	−11.0	−3.7
	등록면허세	−1.8	−1.8	−1.8	−5.4	−1.8
	계	−48.2	−55.1	−63.1	−166.4	−55.5
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0조제1항)	취득세	−22.4	−22.4	−22.4	−67.3	−22.4
	재산세	−8.0	−8.0	−8.0	−24.0	−8.0
	계	−30.4	−30.4	−30.4	−91.3	−30.4
합계		−78.6	−85.5	−93.6	−257.7	−85.9
법인의 수도권 밖 지사설립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(안 제124조의2)		추정곤란				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9조제1항·제2항 (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)	○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80조제1항 (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)	○ 법인이 공장을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3	안제124조의2 (수도권 밖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)	○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는 경우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7년간 100%, 그다음 3년은 50% 감면을 신설 – 단, 광역시 등에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 5년간 100%, 그다음 2년 50% 감면 적용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79조제1항·제2항 (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80조제1항 (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)	○	
3	안 제124조의2 (수도권 밖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)	X	자료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 불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에 따른 법인의 본점·주사무소 및 공장 등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
○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향후 증가한다고 가정

○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○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○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❑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○ 향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
-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제1항)

○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법인이 본사 등을 이전하는 해에 등기 및 등록면허세 신고·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

❑ 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수도권 밖 지사 설립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자료의 부재로 객관적인 추계를 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 되었을 수 있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

❑ (제도개요)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

○ 법인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

- 감면율: 85%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」에 따라 면제 조항임에도 85%의 감면율 적용)
- 적용기한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2027년 12월 31일

○ 법인이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

- 감면율: 면제(100%)
- 적용기한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2027년 12월 31일

○ 법인이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

- 감면율: 85%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」에 따라 면제 조항임에도 85%의 감면율 적용)
- 적용기한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❑ (감면실적)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(본사·주사무소 이전) 2022년 기준 취득세 27.3억원, 재산세 4.0억원, 등록면허세 1.8억원 감면

- (취득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본사·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,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6.2% 수준
- (재산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본사·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3.7억원 수준
- (등록면허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본사·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1.8억원 수준

○ (공장 이전) 2022년 기준 취득세 22.4억원, 재산세 8.0억원 감면

- (취득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취득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22.4억원 수준

- (재산세)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재산세 감면액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, 신규 취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연평균감면액(8.0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2]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0~2022년

(단위: 건, 억원, %)

			2020	2021	2022	'20~'22 연평균감면액	'20~'22 연평균증가율
본사·주사무소 이전	취득세	감면건수	62	82	72	-	-
		감면액	20.2	22.4	27.3	-	16.2
	재산세	감면건수	372	365	433	-	-
		감면액	3.7	3.3	4.0	3.7	-
	등록면허세	감면건수	1,618	1,812	1,683	-	-
		감면액	1.7	1.9	1.8	1.8	-
공장 이전	취득세	감면건수	66	63	44	-	-
		감면액	20.3	25.4	21.6	22.4	-
	재산세	감면건수	716	744	744	-	-
		감면액	8.2	8.1	7.8	8.0	-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❑ 개정안에 따른 향후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방법으로 추계

○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2년 감면액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(2020~2022년) 연평균증가율(16.2%)을 적용하여 추계

○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(3.7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(1.8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(2020~2022년)의 연평균 감면실적(취득세 22.4억원, 재산세 8.0억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법인의 본사·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추계: 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	2022	2023	2024	2025	2026	2027
본사·주사무소 이전	취득세	27.3	31.7	36.8	42.7	49.6	57.6
	재산세	–	–	–	3.7	3.7	3.7
	등록면허세	–	–	–	1.8	1.8	1.8
공장 이전	취득세	–	–	–	22.4	22.4	22.4
	재산세	–	–	–	8.0	8.0	8.0

(3)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5년 78.6억원, 2027년 93.6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57.7억원(연평균 85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166.4억원(연평균 55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~2027년간 총 91.3억원(연평균 3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법인의 수도권 밖 지사설립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자료의 부재로 세수 감소 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누적	연평균
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79조제1항·제2항)	취득세	−42.7	−49.6	−57.6	−150.0	−50.0
	재산세	−3.7	−3.7	−3.7	−11.0	−3.7
	등록면허세	−1.8	−1.8	−1.8	−5.4	−1.8
	계	−48.2	−55.1	−63.1	−166.4	−55.5
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0조제1항)	취득세	−22.4	−22.4	−22.4	−67.3	−22.4
	재산세	−8.0	−8.0	−8.0	−24.0	−8.0
	계	−30.4	−30.4	−30.4	−91.3	−30.4
합계		−78.6	−85.5	−93.6	−257.7	−85.9
법인의 수도권 밖 지사설립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감면 신설(안 제124조의2)		추정곤란				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